

인터넷 자율규제방안의 모색

Government's Role in Internet Regulation

안정민*
Ahn, Jung-Mihn

목차

- I. 서론
- II. 인터넷 자율규제방안으로서 블로그 보험
- III. 미국의 제도를 통하여 본 우리 인터넷 자율규제의 방향
- IV. 결론 : 정부주도적인 자율규제의 필요

국문초록

본 연구는 블로그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타인의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터넷 자율규제방안의 분석을 통해 법적 규제외의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율규제정책을 위한 정책자료로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아쉽게도 다른 사회적인 이슈에 비해 인터넷의 건전한 사용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인터넷 자율규제정책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블로그보험제도의 분석을 통해 우리 현실에 적합한 자율규제의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인터넷에 의한 심각한 법익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문제의 인식을 통한 이용자들의 자율규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우리 이용자들의 인터넷 사용 행태를 미루어볼 때 이용자의 자율규제노력만을 기대하기는 불충분한 실정이다. 포털을 앞장세운 정부의 직·간접적인 규제에 대해 강도 높은 저항이 일고 있지 않는

논문접수일 : 2009. 6. 22.

심사완료일 : 2009. 7. 23.

게재확정일 : 2009. 7. 23.

* 법학박사 · 한림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통신정책을 포함한 인터넷산업은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위시한 논의를 살펴보면 정부의 역할을 설정함에 있어 진흥보다는 인터넷 이용자의 규제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를 규제자의 입장을 초월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인터넷의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계몽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의 시도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산업의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이용자 교육지원예산 확보 및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방안 확립과 교육내용의 개발의 중요성, 그리고 건전한 인터넷문화조성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 인터넷 자율규제, 인터넷규제, 블로그, 블로그보협

1. 서론

1. 들어가며

블로그는 디지털시대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정보를 검색하고 수용하는 수동적인 정보의 사용을 넘어, 사진이나 글을 나만의 웹페이지나 블로그에 공개의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블로그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하고, 내면의 생각을 외부로 표출·공유하게 되면서, 인터넷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가 중요한 법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인터넷은 기존의 활자에 의한 일방적인 출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개인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터넷을 통하면 굳이 공공장소에 나가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 없이 사적인 공간에서 외부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이와 거의 동시에 상대방은 댓글의 형식을 통해 또 다른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의견 표현의 수단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것이 블로그이며, 블로그를 통한 개인들의 의견표출을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이루는 아래로부터의 표현(grassroots speech)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인터넷의 활용도나 블로그의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블로그를 블로그끼리 연결하는 네트워크(social network)사이트나 태그를 통해 같은 성향과 목적을 가진 사

람들이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하기가 쉬워짐에 따라 블로그를 통한 시민기자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블로그는 신속하게 사건현장을 보도하는 등과 같이 뉴스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며, 지명도나 신뢰도를 획득하면서 넓은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블로거도 차츰 등장하고 있다. 블로그와 UGC(User generated contents)를 활용하여 세계적인 인터넷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블로그닷컴(blog.com)이나 유튜브(youtube.com), 블로그광고로 연간 14억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보잉보잉(boingboing.com)이나 테크크런치(techcrunch.com) 등과 같은 미국기업 뿐만 아니라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나 네이버블로그는 인터넷이 가지는 무한한 가능성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질서의 확립에 있어서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규제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단편적이거나 접한 문헌은 미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터넷산업을 진흥시키거나 규제 하고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험가능 공간으로 남겨두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자들은 큰 투자비용의 부담이 없이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IT산업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블로그의 전파력 내지는 영향력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개인적 법익침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쉽게 인터넷을 규제하지 못하는 것은 블로그를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 판례를 통해 일찍부터 인정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인터넷에 대한 국가권력 발동의 자제(自制)가 법익침해의 양태(樣態)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더 중요한 것은, 국가 개입자체가 미국 사이버공간 상에 지속적인 무질서와 혼란만을 남겨놓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도 인터넷사기와 같은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해서 법무국(DOJ)을 비롯하여 각 부처 간의 협력기관¹⁾이 만들어져 정책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사 내지는 경제범죄를 제외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 그것이 진흥이든 규제이든을 불문하고 -은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적음을 볼 수 있다. 인터넷에 대한 규제의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한창인 지금, 국가의 규제와 인터넷산업의 성장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살필 수 있다면, 인터넷 전반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함에 일조(一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본 연구의 발단이 되었다.

1) FBI, 화이트칼라범죄센터(National White Collar Crime Center: NW3C)와 법무부 내의 법무조력부(Bureau of Justice Assistance)를 설치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지방과 연방, 국가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있다.

2. 연구의 한계

인터넷에 의한 법적인 문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효책은 존재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터넷공간은 우리의 실제공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사건과 요인이 조합되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수단과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미국에서의 인터넷자율규제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블로그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타인의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 문제로 그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우리가 앞으로 인터넷 자율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실제로 인터넷 공간에서 각종 법익을 침해하기 위한 규제나 자율규제의 노력은 본 연구에 포함된 사항 이외에도 어디에선가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모두 참고할 수 없었으나, 어느 것도 그 나라 인터넷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일 뿐이지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거나 유일한 인터넷 질서 유지방법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다. 나아가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인터넷 및 언론전반에 관한 정책방향과 정치현실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여타의 국가들과의 비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오히려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일반 법원리나 정책의 기초(基調)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우리 인터넷 현실에 맞는 대안 모색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블로그보험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미디어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미국에서조차 아직 자세하게 소개된 바 없다. 본 연구를 위해서 먼저 미국의 블로거가 가지는 법적 지위 및 보험제도의 운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블로그 보험은 책임보험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보험 그 자체의 기능보다는 이용자교육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I. 인터넷 자율규제 방안으로서의 블로그 보험

1. 블로그의 정의 및 기능

미국의 *Cahill v. John Doe-Number One*²⁾판결에서는 블로그를 특정 이용자와 같은

2) *Cahill v. John Doe-Number One*. 879 A.2d 943 (2005)

주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다른 이용자가 읽고 답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웹 사이트를 말하며, 이용자가 정보를 게시할 때 주로 사용자아이디(user name)와 같은 필명을 사용하는 웹로그의 약자로 정의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이러한 블로그에 정보나 정보에 대한 답글을 게시하는 주체는 블로거(blogger)라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블로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BBS(bulletin board systems)라는 게시판을 이용하여 그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내지는 전자메일을 통한 의견교환만이 가능했었다. 초기에는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던 게시판의 사용 형태였으나, 1990년에 와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알지 못해도 쉽게 블로그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적인 툴(tool)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블로그기술은 점점 발전하여 이용자들의 정보 게시를 한층 용이하게 만들었으며, 이제는 이메일계정과 이름, 비밀번호만 있으면 자신의 블로그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³⁾ 블로그검색으로 유명한 테크노라티가 발표한 2008년 블로그스피어의 통계는 블로그가 그 수적인 면에서나 영향력 면에서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⁴⁾

블로거들은 서로의 블로그를 읽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 여론을 만들어내는 공론장(public sphere)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기능을 한다.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지역적인 소통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블로그를 통한 의사소통은 공통관심사에 의해 검색되고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되기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단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블로그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의 제공과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블로그는 아래로부터의 대화에 의한 민주주의를 실현가능하게 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블로그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순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단순한 주변의 관심사나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블로그의 개수는 전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학술적인 내용을 다루는 블로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정보제공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블로그는 전통적인 미디어(신문이나 방송)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친목이나 취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블로그가 동일한 기능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블로그의 성격이나 기능을 획일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알리거나, 자기가 경험한

3) Mallory Jensen. A Brief History of Weblogs. (최종검색일 2009. 3. 22)
<http://cjrarchives.org/issues/2003/5/blog-jensen.asp?printerfriendly=yes>

4) 테크노라티 Technorati. (최종검색일 2009. 3. 22)
<http://www.technorati.com/blogging/state-of-the-blogsphere/>

것을 공유하는 단순 정보제공적인 블로그에서부터 연예인이나 공인들에 대한 가십의 게재를 목적으로 하는 블로그도 있다. 블로그의 기능이 다양한 만큼, 블로그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법익의 침해양태나 이에 대한 규제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자. 먼저 홈페이지나 인터넷 댓글의 게시를 통한 타인의 명예훼손이나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들 수 있겠다. 블로그에 소설이나 음악을 올린 미성년자들의 저작권위반행위의 처벌에 따른 청소년 전과자의 양산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⁵⁾ 또 무죄로 판결 내려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 및 ISP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여부도 현안이 되고 있다.

포드캐스팅(podcasting)이나 파일공유(file sharing), 블로그의 생성과 같은 인터넷의 적극적인 이용은 기술이 제공하고자 했던 본연의 기능과 함께 콘텐츠의 불법적인 사용을 증가시켰다. 이에 관한 대책의 필요성은 자주 거론되고 있으나 상습적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는 이용자는 많은 인터넷 이용자의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은 조명되지 않고 있다. 블로그를 운영하고 타인의 블로그를 방문하는 이용자는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이들이 자신의 온라인상의 행위가 저작권침해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생성한 것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원저작자 내지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반인"인 이용자가 명예훼손에서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무엇을 말하는지, 인터넷상에서 필요한 저작권이 무엇인지 알기는 쉽지 않다. 어디서 어떻게 저작권자를 찾아야 할 지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침해에 대해 무조건 형벌을 강화하는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특히 저작물을 블로그 등에 게시하여 전시하는 하나의 행위는 저작물을 복제(reproduction), 전시(public display)하고 나아가 배포(distribution)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 이상의 권리침해 문제를 가져 오기 때문에 이용자들을 더욱 더 혼란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의도적인 저작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나 제재는 블로거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없게 만드는 표현의 위축현상을 가

5)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이 2006년 611명에서, 2007년에는 2,832명, 2008년에는 23,000여명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된 청소년 가운데 초범이고 우발적인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각하처분을 내리기로 한바 있다(2009.2.22 연합뉴스).

저오게 된다.

블로그에 의한 법적 분쟁의 증가는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 미국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등의 침해를 이유로 기소당하는 블로거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미디어법연구센터(Media Law Research Center)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이후 미국에서 (법원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사건을 제외하고도) 200여건의 블로거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며 금전적인 배상이 명령된 판결도 많다고 한다.⁶⁾

나라마다 온라인에 실정법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이나 형법 등의 관련법을 정비하여 유연한 법의 적용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저작권을 침해당한 자나 게시물에 의해 명예를 실추당한 피해자는 전적으로 공권력에 의존하여 침해당한 법익의 구제를 바라고만 있을 뿐이며, 인터넷 이용자들은 연일 보도되는 처벌의 수위강화에 자신의 게시물이 합법적인 것인지 위법한 것인지도 모르는 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만들어 버린다. 다국적 인터넷기업이 시장진출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경우 권리자나 잠재적인 침해자 여부를 떠나 법률 통한 규제 이전에 자율적인 통제나 다양한 질서유지 수단을 모색하고 있음에 비해 대조적이라 하겠다.

미국에서는 블로거들이 법의 보호범위 내에서 활발한 블로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블로깅과 관련한 법률문제나 블로거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민간단체가 만들어져 있다. 블로거 보호위원회(Committee to Protect Bloggers)⁷⁾, 전자 프런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⁸⁾, 표현의 자유 센터(First Amendment Center)⁹⁾, 미디어 블로거 협회(Media Bloggers Association)¹⁰⁾, 시민 미디어법 프로젝트의 법률가이드(Citizen Media Law Project's Legal Guide)¹¹⁾ 외에 우리에게 익숙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¹²⁾도 이러한 민간단체의 하나이다. 이러한 기구들은 정부의 미디어, 특히 블로그에 대한 규제범위를 블로거들에게 알리고 교육시켜 적법한 범위 내에서 블로거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고 불합리한 규제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수호

6) 미디어로(최종검색일 2009. 3. 19) <http://www.medialaw.org/Template.cfm?Section=Home>

7) 블로거 보호위원회. <http://www.committeetoprotectbloggers.org/>

8) 전자 프런티어 재단. <http://w2.eff.org/bloggers/>: 1990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미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옹호해주고 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받으면 변호 및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있다.

9) 표현의 자유 센터. <http://www.firstamendmentcenter.org>

10) 미디어 블로거 협회. <http://www.mediabloggers.org/>

11) 시민 미디어법 프로젝트, 법률가이드. <http://www.citmedialaw.org/legal-guide>

12)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http://creativecommons.org/>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뒤에서 볼 미국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방안도 이러한 민간단체들의 활동에 의해 고안되고 있음은 주지할 만한 일이다. 인터넷환경을 시시각각으로 바꾸는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율규제의 모색은 인터넷강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2. 블로거에 대한 법적 보호

먼저 블로그와 관련한 미국의 법적 논의를 살펴보면 블로그가 새로운 미디어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를 위해 다방면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³⁾ 미국에서 블로그에 관한 논의는 이제 단순한 인터넷의 이용으로 보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를 지나, 공개를 목적으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게시하는 블로거에게 기자(journalist)에게만 주어지는 취재원의 비밀과 같은 특권까지도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쟁점이 되고 있다.

블로거들에 대한 기자특권의 인정여부가 문제되는 이유는 블로그가 다른 매체와 유사한 정보전달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와 관련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의 대응에 있어서는 신문기사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기자들에게는 기자취재원 보호법(Media Shield Laws)이 적용되는 반면¹⁴⁾ 블로거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제공자를 밝혀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고, 종종 취재원을 밝히려는 법원의 명령에 블로거들이 따르지 않아 구금당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블로거를 기자와 동일하게 보아 위와 같은 취재원보호 특권을 인정해야 하는가에 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은 Apple Computer, Inc. v. Doe 사건이다. 본 사건은 Apple사의 새로운 상품에 대한 영업비밀(trade secret)을 누설한 블로거에게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블로거(정보누설자)의 신원을 공개할 것을 요구

13) Nathan Fennessy(2006). BRINGING BLOGGERS INTO THE JOURNALISTIC PRIVILEGE FOLD. 55 Cath. U. L. Rev. 1059 ; David McGowan (2005). Response. Approximately Speech. 89 Minn. L. Rev. 1416. 1434-36.

14) 하와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일련의 미디어 취재원 보호법이 존재한다. State v. Salsbury. 924 P.2d 208. 213 (Idaho 1996); State v. Siel. 444 A.2d 499. 503 (N.H. 1982); Hopewell v. Midcontinent Broad. Corp.. 538 N.W.2d 780. 782 (S.D. 1995)참고. In re Goodfader. 367 P.2d 472. 481-82 (Haw. 1961)에서 명시적인 입법자의 의도없이 기자들에게 어떤 특권도 줄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한 사건이었다.¹⁵⁾

애플컴퓨터는 2004년 12월 "Asteroid"라 불리던 신상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몇 개의 웹사이트에 이에 관한 정보를 올린 익명의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NFox에 대해 익명자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발부받았다. 이러한 지방법원의 소환 명령에 대해 익명의 블로거를 대신하여 다른 블로거들이 소송참가인 자격으로 자신의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문제의 정보를 게재한 블로거들 역시 캘리포니아주의 기자취재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수 있으며, 게시된 정보는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게시물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애플컴퓨터사는 취재원의 보호가 영업비밀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적용된다 하더라도 i) 블로거들은 기자취재원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출판자(publisher), 편집자(editor), 리포터(reporter) 또는 신문사, 잡지 또는 다른 정기간행물과 관련되어 있거나 이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other person connected with or employed upon a newspaper, magazine, or other periodical publication)이 아니라는 것과 ii) 정보에 대한 애플사의 절대적인 필요(compelling need for information)가 무엇보다도 우선한다는 근거를 들어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블로거들이 캘리포니아주의 기자취재원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하였다. 다만 기자특권이 기자에게 형법을 어길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블로거는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특별한 가치를 더함이 없이 정보를 게시함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자취재원보호법이 정하는 기자(journalist)에 블로거가 해당하지 않음만을 암시하였을 뿐이었다.¹⁶⁾ 1심법원의 판단은 블로거가 기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른 곳에서 얻은 정보를 유포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어야 기존 미디어 기자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의 블로거들은 "기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심법원의 판단은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에 가서 파기되었다. 항소법원은 본 사건과 같은 웹사이트들이 기자취재원보호법이 말하는 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거나 블로거들이 동법이 정하는 기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이유를

15) Apple Computer, Inc. v. Doe. No. 1-04-CV-032178 (Cal. Super. Mar. 11, 2005) (granting discovery motion), rev'd sub. nom. O'Grady, et al. v. Super. Ct. of Santa Clara County, Case No. H028579 (Cal. App. 6th Dist. May 26, 2006).

16) Id. at *7 n.7, 1197 n.7

밝혔다. 즉, 항소법원은 블로거나 웹마스터에게도 적어도 취재원(confidential source) 폭로에 관해서 만은 전통적인 미디어의 기자에게 부여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애플사가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본 사건은 종결되었다.

본 판결은 블로거도 전통적인 미디어와 같이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에 이르렀으며, 그에 따른 보호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제 블로그와 같은 인터넷 게시판도 기존 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하는 매체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⁷⁾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에 게재된 글로 인한 크고 작은 개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들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블로거에게 특정 법적 지위나 언론인과 유사한 표현의 자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은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미네르바 판결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전달 내지는 의견의 표명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언급한다. 본 사건은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아고라' 경제토론폰방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국내외 경제 동향분석과 예측의 글을 게재한 인터넷이용자에 관한 사건이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을 근거로 기소하였다. 본 조항에 따르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법원은 비록 미네르바가 이 사건에서 게재한 글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있어서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즉, 허위사실의 인식이나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의 무죄판결을 두고 사회 각층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네르바의 기소근거로 사용된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불확정개념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사실 상상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미네르바 사건을 두고 미국과 한국의 인터넷 규제 전반에 대한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17) 이 외에도 블로그에 대한 여러 판결을 통해 블로거에게 기존의 기자(journalist)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어 왔으며, 블로거들의 저널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한 일환으로 기존 미디어에게 제공되어 왔던 책임보험까지 만들어지게 된다.

본 판결을 계기로 정부의 무분별한 인터넷규제에 제동이 걸리리라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인터넷규제에 대해서는 방임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6년 통신법(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은 인터넷의 지속적인 발전을 장려하고, 현재와 같이 연방이나 주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의 약동적이고 자유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국가적 정책으로 선언하고 있다.¹⁸⁾ 우리나라에 비해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인터넷이나 블로그의 규제에 관해서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고수되고 있다.¹⁹⁾ 블로그나 인터넷에 관련해서 나오는 판결을 조사해보았을 때 대부분의 법적 분쟁은 명예훼손과 관련한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사건이 대부분이며 형사사건은 10건 정도에 불과하다. 블로그를 이용한 성매매, 아동포르노와 같은 범죄행위의 도구로 사용하여 문제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연방법위반에 의한 기소는 찾아볼 수 없어²⁰⁾ 미국의 경우 우리와 달리 국가 공권력에 의한 제재보다는 사인간의 분쟁해결방법이 선호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3. 블로그보험

블로그보험은 일인미디어의 대표주자적인 블로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방안의 하나로 탄생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한 헌법적 보호가 주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인터넷을 규제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블로그를 생성하여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상이나 신변에 관한 글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타인(他人)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된 글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배경음악 내지는 자

18)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47 U.S.C. § 230(b) (2006).

It i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1) to promote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other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and other interactive media:

(2) to preserve the vibrant and competitive free market that presently exists for the Internet and other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unfettered by Federal or State regulation:....

19) 미국의 경우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터넷은 다른 어느 매체보다도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매체라는 것이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다.

20) <http://www.medialaw.org/Template.cfm?Section=Home> (최종검색일 2009. 3. 19)

신이 게시한 콘텐츠에 의해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가능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블로거들의 활동범위를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이에 블로거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예방하고, 적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법의 교육과 보험을 통합한 블로그인슈어(BlogInsure)라는 블로그 보험제도가 등장하게 된다.

블로그보험은 블로그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명예훼손, 사생활침해나 저작권침해 또는 그와 유사한 분쟁을 보장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미디어 책임보험이 월 USD 1,500 ~ 2,500으로 미디어 기업이 아닌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던 반면 블로그 보험의 보험료는 개인의 경우 납입보험료가 USD 540부터 시작한다. 가입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청이 있으면 보험사에서 보장받고자 하는 블로그를 여러 가지 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심사한 후 보험가입허락여부와 그 요율을 결정하게 된다.

블로그보험의 가입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그러나 수인의 블로거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대해 개인 한 사람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외의 다른 공동운영자들은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만일 여러 사람이 하나의 블로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각 가입하여야 한다. 본인의 블로그 외의 다른 블로그에 게시하는 본인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입을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험의 가입과 요율을 결정하는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보험사의 재량에 따르지만 보험이 보장하는 법적 분쟁의 종류가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및 저작권의 침해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지, 분쟁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가 올라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이 특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²¹⁾

- 21) - 블로그의 성격 : 사적인 일기스타일인지, 뉴스제공 기능이 중요한지 등
- 블로그를 운영한 기간
 - 블로그를 통해서 상업적 이익을 얻고 있는지의 여부
 - 기사를 직접 취재하고 직접 작성하는지의 여부
 - 자신의 블로그에 오는 방문자의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또는 금융정보)를 수집하는지의 여부
 - 본인 외의 다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블로그에 콘텐츠를 게시하는지의 여부
 - 발표된 음악이나 비디오를 업로드시키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특정 회사의 상품을 선전하도록 계약되어 있는지의 여부
 - 블로그 활동 때문에 법적 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있는지의 여부
 - 장래 법적 소송으로 전개될 수 있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 신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그 제품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지의 여부
 - 지방정부나 제약/건강관리산업/부동산 활동에 관여되어 있는지의 여부
 -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운동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
 - 블로그와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지의 여부
 - 저널리스트로 미디어단체에 가입되어 있는지의 여부
 - 문제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 조취를 취하는(take-down policy)지의 여부

블로그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자는 반드시 미디어블로거협회에 우선 가입하여야 하며, 이때 온라인 미디어법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미디어법의 수강이나 자신의 법적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은 가입과 관계없이 무료로 수강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²²⁾ 블로그보험의 핵심은 많은 인터넷이용자들에게 관련법을 교육시켜 사전에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자는 데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이용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원하는 횟수만큼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통상 과목을 수강한 후에 평가시험이 주어지고 75점 이상을 받으면 그 점수를 미디어블로거협회에 보내어 가입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이러한 절차의 운영은 협회로의 가입을 어렵게 하고자 함이 아니고 블로거들이 충분히 관련 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이메일로 재수강과 시험을 다시 보고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시험의 결과는 BlogInsure 상품의 할인율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내용을 숙지하여 높은 점수를 얻고자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블로그보험은 시민 단체인 미디어블로거협회(Media Bloggers Association)가 주도하고 미디어 책임보험을 설계해 온 보험사와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만들어졌다.²³⁾ 미디어블로거협회는 비정치적 비영리단체로 협회회원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키며, 블로깅(blogging)이나 시민저널리즘(citizen journalism)을 미디어의 한 유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단체로서 언론매체의 사용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알리고 확보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²⁴⁾ 이와 같이 블로그보험은 단순한 보험 상품이 아닌 자발적으로 블로거들의 교육을 통해 블로그의 순기능인 여론의 형성기능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나아가 블로그보험은 인터넷의 제기능에 수반하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는 산·학·민간의 협동작업의 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다.

22) 뉴스유니버시티, (최종검색일 2009. 3. 19)

http://www.newsu.org/courses/course_detail.aspx?id=nwsu_medialaw08

23) 온라인수업은 Poynter Institute's News University(www.newsu.org)에서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하버드대학의 버크만센터(Harvard Law School's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와 시민미디어센터(Center for Citizen Media)와 협력관계에 있는 시민미디어법프로젝트(Citizen Media Law Project: CMLP)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되었고, 수강 후에 치르는 평가시험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미디어 책임보험사로 1979년부터 출판업자와 방송사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이나 기타 법익의 침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취급해 온 미디어/프로페셔널(Media/Professional)보험사측에서 만들었다.

24) 미디어 블로그 협회 사이트 참조 (www.mediabloggers.org)

Ⅲ. 미국의 제도를 통하여 본 우리 인터넷 자율규제의 방향

블로그보험은 최근 급성장한 블로그 시장의 필요에 따라 사적 영역(private sector)에서 개발되었다. 기존의 미디어 책임보험이 재정능력이 뒷받침되어 주는 거대 미디어기업들을 계약당사자로 설정하고 설계되어 있음에 비해 블로그보험은 일인미디어의 대표주자인 블로거를 위해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블로그보험은 블로그를 통해 많은 법적 쟁점이 되고 있는 명예훼손이나 지적재산권침해 소송으로부터 블로거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점과 보험가입 조건으로 관련법 과목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미국의 블로그보험제도의 시사점

미국에서는 각종 인터넷 미디어단체가 만들어져 바람직한 이용자의 역할을 정립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권리인식과 함께 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기관이나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해 정보전달의 기능을 수행하는 블로거들은 예전의 전통 미디어매체기자(journalist)를 양성하기 위해 제공되었던 각종 미디어관련 교육과 제도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각 미디어의 특성에 맞는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한 저널리즘교육은 인터넷에 맞게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이용자 스스로 추구하고 마련하는 모습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미국의 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특히 블로그활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법익침해와 그로 인한 자신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블로그 보험제도는 손해에 대한 보장이라는 보험 본연의 목적 외에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여 공개할 때에는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인식을 심어주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블로그보험의 핵심은 보장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활동을 통해 쉽게 침해할 수 있는 법을 사전에 교육시켜 예방하자는 데에 있다. 보험가입을 위해서 반드시 미디어법을 수강하도록 한 것과 보험가입대상자가 아닌 누구라도 무료로 온라인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정인이 아닌 이용자 일반을 교육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미디어법의 수강을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 대해 강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하고자 하는 자를 -즉, 보험이라는 제도의 가입

을 통해 자신의 권리행사 범위를 확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는 우리 미디어정책이 위협하고 있는 “미디어 다양성”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주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각 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 내린 판단을 존중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인터넷이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모든 인터넷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획일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 반면에 적절한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고 제도적인 보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으면서, 그러한 보험제도나 교육의 조력을 받지 않고도 자신에게 보장되는 권리의 범위를 숙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강제하지 않는 즉,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제도적 보호장치를 활용하는 것은 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2000년도에는 불과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의 수밖에 되지 않았던 블로그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몇 만 개씩 생성되고 있다. 이미 기존 미디어매체와 유사한 정보 전달기능을 행사하고 있는 블로그들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들은 기존 매체보다 더 빠르고 생생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기도 한다. 기존의 미디어매체들은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현장에 출동하여 뉴스를 전달해야 하는 반면 휴대하고 있는 전화기나 디지털카메라로 사고 발생현장에 있던 개인이 일인미디어자가 되어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과 인터넷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아마추어 기자가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미디어가 정보전달에 있어 거치는 기사선발, 기사선별 및 선정, 기사에 대한 감수 등의 몇 단계의 검증절차 없이 바로 블로그에 실어버리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확률도 높을 수 있다. 또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의식이나 준법의식이 소위 “전문”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가 기존 매체의 기자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특별히 더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적어도 미국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개인이 일인미디어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우리나라의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자율규제의 한계

가. 이용자 주체의식의 결여

우리가 미국의 블로그보험 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만들어진 제도의 도입이나 운영방법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단체인 미디어블로거협회와 학계, 보험업계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센터(First Amendment Center)나 미디어블로거협회(Media Bloggers Association), 하버드대학의 인터넷법센터가 운영하는 시민미디어법프로젝트(Citizen Media Law Project)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 이용자의 바람직한 인터넷 사용과 이용자보호를 위해 이용자 스스로가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인터넷에 의한 피해를 규제로써 고쳐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자신의 편익에 맞게 새로운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가고 있는 미국 인터넷이용자들은 우리가 말과 이론으로써만 주장하는 인터넷 자율규제를 스스로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당수 이용자들은 단순 호기심이나 군중심리에 휩쓸려 사이버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²⁵⁾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군중 속에 묻히고자 하는 이용자에게는 주체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어디론가 쏠려가는 기류에 편승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지만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용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 정부정책의 반대와 같은 정치적 사안이나 이익집단의 각종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네티즌연대와 같이 정치적 선동을 주도하는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영향력 있는 이용자 시민단체는 흔치 않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합법적인 이용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한 인터넷시민단체의 활발한 활동이 시급하다. 인터넷에 관한 정부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기업 연합체(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²⁶⁾나 한국인터넷기업협회²⁷⁾ 등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 반해 이와 견줄만한 규모와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이용자단체가 없다는 것이 이용자 주도적인 자율규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조성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보다 절실하다 할 것이다.

나. 포털의존적인 “자율”규제의 한계

25) 김영문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월간 정보보호21c 통권 제98호 기사 (최종검색일 2009. 3. 22)

http://www.boannews.com/know_how/view.asp?page=4&gpage=1&idx=2285&numm=1926&search=title&find=&kind=03&order=ref

26)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최종검색일 2009. 3. 22) <http://www.impress.or.kr>

27)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종검색일 2009. 3. 22) <http://www.kinternet.org>

우리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하다고 하여 인터넷의 여러 법익침해 현상에 대한 자율규제의 시도가 전혀 불가능하거나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검색엔진과 여러 편의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는 인터넷이용에 있어서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관문이 되었다. 몇몇의 대형포털사이트는 지식검색, 블로그나 미니홈페이지, 커뮤니티 등을 구축하여 이용자들이 포털사이트 안에서 뉴스와 메일을 포함한 모든 검색과 블로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말 그대로 포털이 인터넷으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시민단체들은 포털에게 "자율"규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에 대해 삭제할 것을 요청하며 저작권에 위반되는 음악의 유통을 금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3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은 제103조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법 제103조).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포털에게(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물이나 정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까지 담고 있다. 말은 "자율"규제이지만 여기에는 자율규제의 본연의 의미인 이용자나 인터넷 포털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한 규율의 의미는 담겨있지 않다.

포털은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기업과 다름이 없다. 이들의 경영구조는 더 많은 이용자가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하여 사용 할수록 이익이 증가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드려야 하는 포털에게 건전한 인터넷사용문화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이용자감소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용자가 게시한 글을 임의로 삭제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온라인교육을 받을 것을 이용조건으로 하는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용자의 사이트방문이 절대적인 영업기반이 되는 포털로서는 자율규제의 범위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나 내용중립적인 기술적 규제가 그 한계일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UCC 또는 UGC(User Generated Contents)가 새로운 미디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나가면서 불법적인 UGC도 성행하게 되었다. 이에 세계적인 저작권보유기업인 CBS, Dailymotion, Disney, Fox, NBC Universal,

Microsoft, Veoh, Viacom 과 같은 인터넷관련 기업들이 주도하여 UGC관련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방안인 UGC원칙을 선언한 바 있다. UGC 원칙이란 저작권자와 UGC 서비스제공자간의 협력으로 불법적인 UGC를 없애고, 이용자로 하여금 창작물을 게시하는 것을 장려, 공정사용(fair use)을 유도하고 또 이용자의 합법적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려는 상호간의 원칙을 말한다.²⁸⁾ UGC원칙은 강제되는 법은 아니고 다만 준수여부가 개인의 의지에 맡겨져 있는 선언적인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그렇지만 동 원칙은 UGC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UGC의 무제한적인 장려 내지는 저작권의 무조건적인 보호의 한 쪽을 택하는 경우 창의적인 표현이 제한되거나 기술적 혁신의 저하와 같은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이전에 스스로 규제하는 자율규제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동 원칙 자체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작권자와 UGC서비스간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UGC서비스로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서비스제공자도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일방적인 금지가 아닌 쌍방적인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들은 국가의 규제가 아니어도 인터넷기업들이 이용자의 창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권보호라는 충돌이익을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율규제방안은 국가의 인터넷 규제여부에 관한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²⁹⁾, 포털에 의한 진정한 자율규제라 평가할 수 있다.

IV. 결론 : 정부주도적인 자율규제의 필요

인터넷에 의한 심각한 법익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이용

28) UGC원칙은 UGC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할 것과 이용자들이 저작권침해 콘텐츠를 게시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정보를 알려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또 UGC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불법적인 업로드를 금지하여야 하며, UGC 불법 콘텐츠의 제거를 위하여 가능한 필터링 절차를 실행하기 위한 콘텐츠식별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UGC서비스제공자가 동 원칙을 따르고 지키는 한 이용자에 의해 저작권을 침해받은 저작권자도 UGC서비스제공자에게는 이용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며, 상호간에 저작권침해 없는 풍부한 콘텐츠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것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UGC 원칙. (최종검색일 2009. 3. 22) <http://www.ugcprinciples.com/>

29) Charles j. Biederman & Danny Andrews(2008). Applying Copyright Law to User-Generated Content. 31-May L. A. Law 12 참조

자들의 자발적인 자율규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우리의 인터넷사용 행태를 미루어볼 때 이용자에 의한 자율규제노력만을 기대하기는 불충분하다. 인기 연예인의 자살, 선행행위에 대한 악플, 블로그에 의한 타인의 명예훼손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건전한 인터넷문화조성을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나 포털을 통한 정부의 규제강화나 제재보다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에도 공감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는 내가 아닌 “누군가가” 이를 주도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인터넷에 의한 법익침해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규제가 아니라 교육을 통한 예방임을 보아왔다. 우리 현실상 이러한 교육을 정착시킬 수 있는 주체는 정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에 따른 표현의 자유침해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결국 정부주도적인 자율규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다. 정부주도적인 자율규제정책은 어느 누가 실시하는 정책보다도 적극적으로 그 활용을 권장하고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정부주도적인 이용자교육은 여러 채널을 통해 시범 실시되고 있다. 법무부가 7개의 포털사이트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³⁰⁾도 정부주도적인 인터넷문화정착의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이 작년부터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그 하나이다.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의 경우 담당검사의 판단에 따라 일정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차분을 하는 제도로 2007년 개정된 소년법 제49조의 3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 캠페인의 실시와 함께 그 활용도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캠페인 사이트만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그 활용이나 보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기소유예제와 같은 사후적인 이용자교육보다 효과적인 것은 사전적인 이용자교육을 통한 근본적 해결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등을 통한 제도권 내에서의 인터넷문화정책을 위한 교육의 실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교육의 내용은 이용자 스스로 인터넷공간을 현실사회에 준하여 대할 것과, 자신과 타인의 법적 보호영역의 존재를 인식함과 아울러 서로간의 법익존중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제는 인터넷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선가 나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을 고찰하고 우리 인터넷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자율규제

30) 저작권 보호 캠페인 (최종검색일 2009. 3. 22) www.portalcopyright.com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야 할 시기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무리하게 포털의 기술과 자원을 동원한 인터넷규제 보다는 인터넷산업의 밀받침이 될 수 있는 이용자 교육방안 확립과 교육내용의 개발이 필요하다. 단순한 정책선언적인 제시가 아닌, 구체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내용과 보호방안을 내용에 담을수록 효과가 확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용자 시민단체의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시민단체는 이용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용자 개개인을 대변하여 인터넷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고, 국가로부터 제도적 보호를 요구할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적극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만큼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인터넷에 관련된 제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에 의해 추진·연구되고 그 주도하에만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정부 및 산하 연구기관들은 인터넷을 규제하는 단순한 법의 집행보다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양한 자율규제방안을 고안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진흥정책에 의해 IT강국이 된 우리 인터넷산업이 이제는 정부 규제칼날의 끝만을 바라보고 있다. 진흥과 규제의 적절한 조화만이 경쟁적인 융합시대의 인터넷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이제는 이용자가 주체가 되는 다양한 자율규제방안이 정책적으로 모색되고 실시되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외국논문>

- Charles J. Biederman & Danny Andrews(2008). "Applying Copyright Law to User-Generated Content". 31-May *L. A. Law* 12
- John E. Black Jr. et al.(2002) "Dangers Lurk in Cyberspace". *Bus. L. Today*, July-Aug.
- Nathan Fennessy(2006). "Bringing Bloggers into the Journalistic Privilege Fold". 55 *Cath. U. L. Rev.* 1059
- Allison R. Hayward(2008). "Regulation of Blog Campaign Advocacy on the Internet :

- Comparing U.S., German, and EU Approaches”, 16 *Cardozo J. Int’l & Comp. L.* 379
- David McGowan(2005). “Response. Approximately Speech”, 89 *Minn. L. Rev.* 1416
- Jeffery W. Natke(2007). “Collapsing Copyright Divisibility: A Proposal for Situational of Medium Specific Indivisibility”, 2007 *Mich. St. L. Rev.* 483
- Paul Ohm(2008). “The Myth of the Superuser: Fear, Risk, and Harm Online”. 41 *U.C. Davis L. Rev.* 1327
- Benjamin Ostrander(2007). “Problems and Solutions to Corporate Blogging: Model Blogging Guidelines”, 7 *J. High Tech. L.* 226
- Lindsey Powell(2006). “Getting Around Circumvention: A Proposal for Taking FECA Online”, 58 *Stan. L. Rev.* 1499
- Charles L. Simmons, Jr.(2005). “Business Insurance Targets Risks Posed by New Technology”, *Md. B.J.*
- Nicole A. Stafford(2007). “Lose the Distinction: Internet Bloggers and First Amendment Protection of Libel Defendants - Citizen Journalism and the Supreme Court’s Murky Jurisprudence Blur the Line Between Media and Non-Media Speakers”. 84 *U. Det. Mercy L. Rev.* 597
- Sunny Woan(2008). “The Blogosphere: Past, Present and Future. Preserving the Unfettered Development of Alternative Journalism”, 44 *Cal. W. L. Rev.* 477
- Michelle A. Wyant(2008). “Confronting the Limits of the First Amendment: A Proactive Approach for Media Defendants Facing Liability Abroad”. 9 *San Diego Int’l L.J.* 367

〈판례〉

- Cahill v. John Doe-Number One, 879 A.2d 943 (2005)
- State v. Salsbury, 924 P.2d 208, 213 (Idaho 1996)
- State v. Siel, 444 A.2d 499, 503 (N.H. 1982)
- Hopewell v. Midcontinent Broad. Corp., 538 N.W.2d 780, 782 (S.D. 1995)
- In re Goodfader, 367 P.2d 472, 481-82 (Haw. 1961)
- Apple Computer, Inc. v. Doe, No. 1-04-CV-032178 (Cal. Super. Mar. 11, 2005) (granting discovery motion), rev’d sub. nom. O’Grady, et al. v. Super. Ct. of Santa Clara County, Case No. H028579 (Cal. App. 6th Dist. May 26, 2006)

〈웹사이트〉

<http://www.technorati.com/blogging/state-of-the-blogsphere/>

<http://cjrarchives.org/>

<http://www.medialaw.org/Template.cfm?Section=Home>

<http://www.committeetoprotectbloggers.org/>

<http://w2.eff.org/bloggers/>

<http://www.firstamendmentcenter.org>

<http://www.mediabloggers.org/>

<http://www.citmedialaw.org/legal-guide>

<http://creativecommons.org/>

[Abstract]

Government's Role in Internet Regulation

Ahn, Jung-Mihn

Professor, Division of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Hallym University

An American blogger organization, the Media Bloggers Association, has launched a scheme to give bloggers the same access to legal support as traditional media organizations. This is a part of self-regulation schemes which will cover parties against defamation claims, allegations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invasion of privacy occurring through blog activities.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 Internet is not conducive to traditional forms of media regulations due to its international nature and its difficulty of enforcement. It has also been accepted that self-regulation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effective means of addressing offences resulted from Internet activities. This paper introduces and identifies several self-regulatory approaches taken by the internet users of the United States. There is no doubt that govern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initiate self-regulatory movements and in advancing public policy objectives. Self-regulatory measures hold greater promise in advancing public policy objectives than government regulation does. Therefore, government should find ways to support in setting up self-regulatory measures.

Key words : internet regulation, self-regulation, government's role, blog insurance, BlogInsure

